

명성이 확보된다고 보며, 이런 식의 개정은 행자부의 자리 지키기 또는 영역확보라는 동물적 사고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.

- 경영평가 및 진단도 행자부 산하의 한국자치경영평가원과 전국지방공사 의료원 연합회에서 하는 등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13명, 출석위원 11명, 전원일치)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안 제2조 본문중 “15,931명”을 “15,883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2호중 “5,064명”을 “5,016명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본문중 “15,818명”을 “15,883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10,256명”을 “10,285명”으로 하며, 동조제2호중 “4,980명”을 “5,016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한시정원) 이 조례에 의하여 개정되는 지방공무원정원중 5명(주·정차위반 단속업무 수행 인력)은 2003년 7월 31일까지, 22명(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지원인력 7명,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정원 15명)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